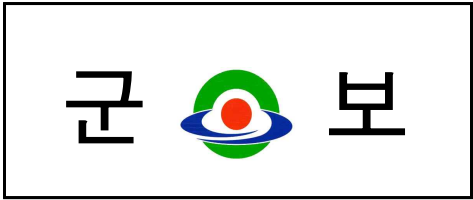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04호 2026. 5. 7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차 모집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6-76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차 모집 공고

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이웃 간 상생하는
건실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
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7일

예 천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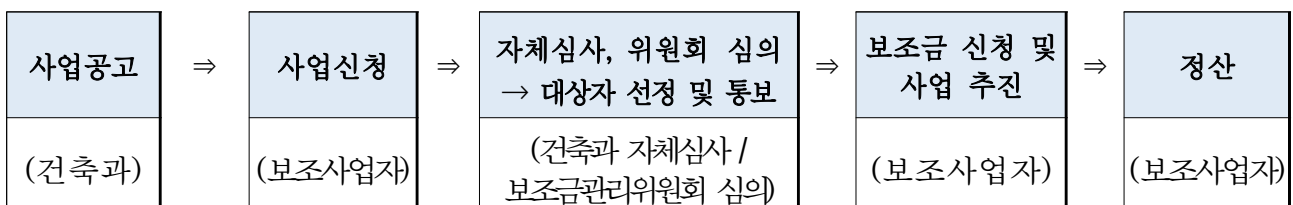
2026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차 공모

1 사업개요

- **지원근거** : 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7조의2
- **지원대상** :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 ※ 미신청단지 우선지원
- **예산총액** : 50,000천원
 - 가. 최초 참여 단지 : 총 사업비의 10%이상 자부담
 - 나. 2회차 참여 단지 : 총 사업비의 20%이상 자부담
 - 다. 3회차 참여 단지 : 총 사업비의 30%이상 자부담
 - 라. 4회차 이상 참여 단지 : 총 사업비의 40%이상 자부담
- ※ 2025년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비율 10% 경감
- ※ 단, 1개소 단지 지원 상한액은 5,000천원으로 함
- **사업내용** : 단지 별 희망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

사업 유형	프로그램 예시
소통 / 주민화합	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⑤ 아파트 신문 발간
친환경 실천/체험	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텃밭 가꾸기 ③ 녹색장터 ④ 에너지절약교육 / 생활용품공유 ⑤ 체험활동
교육 / 보육	① 취미교실 ② 반찬품앗이, 이유식 만들기 ③ 자녀교육 ④ 보육 / 공동육아
문화 강좌	① 운동, 건강교실(GX, 헬스, 요가) ② 어학교실(영어, 한문) ③ 음악교실 ④ 교양강좌
기타 활동	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④ 입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
혼 합	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혼합

○ 추진절차



※ 정산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차년도 자부담 비율 10%경감
(평가 기준: [별지 제9호 서식]참고)

2 사업 신청

- **신청기간** : 2026. 5. 7.(목) ~ 2026. 5. 22.(금) 18:00 마감
- **신청방법** : 보탬e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 접수 신청
- **신청서류**
 - 가. 공모사업 신청서 1부.
 - 나.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.
 - 다. 사업계획서 1부.
 - 라.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(변경)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.
 - 마.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.
- ※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수리 및 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결 내용 포함
- **참고자료**
 - 가.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.
 - 나.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1부.

3 사업 선정

- **선정 절차**
 - 가. 1차 심사: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른 건축과 자체 검토
 - 나. 2차 심사: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
- **결과 발표** : 선정단지 개별통지(2026. 7~8월 예정)

4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
 - 가.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나.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
- 다.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단지 별 단일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함
 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(☎054)650-694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[별표 제1호 서식]

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

보조비목	편성 기준
- 홍보비 - 인쇄비	-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- 실비정산 - 예시: 홍보물, 홍보용품, 현수막, 기념물
- 물품구입비 - 사무용품구입비	-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- 실비정산 ※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(예시: 컴퓨터, TV 등)
- 단기임차료	-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, 차량, 행사장, 작업장 등 임차 비용 - 실비정산
- 시외여비	-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- 실비 정산 - 예시: 유류비, 주차비, 통행요금, 교통비 - 숙박비: 1인 1박 5만원 기준으로 편성
- 식비 - 간담회비	- 식비: 1인 1식 9천원 이내 편성 - 다과비: 1인 4천원 이내 편성 ※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·행사의 참석자 식대, 다과비 또는 주류 구매로는 편성 불가 ※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
- 외래 강사료	- 지급단가: [별표 제2호 서식]참고 - 1인당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(기본시간 1시간 + 초과시간 2시간) ※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※ 월간 지급 강사료가 125,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
- 공연비	- 5인 이하: 50만원 - 6-10인 이하: 60만원 - 11인 이상: 70만원 ※ 월간 개인에게 지급 되는 금액이 125,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※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가 포함된 지급한도금액임
- 시설공사비	- 실비정산 - 예시: 공간 조성, 공연 무대 설치 ※ 행위허가, 신고대상이 아닌 것에 한함
- 체험비	- 실비정산 - 예시: 현장학습 입장료

☐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, 예천군 관내 사용 원칙

※ 불가피한 경우: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나, 관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

☐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세부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시 별도 안내

☐ 보조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(054-650-6943)

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

비 목	등 급	대 상(전·현직)		지급한도액(원)		비 고
	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 본 1 시 간	초과시간	
강 사 비	특급 (전·현 직)	- 장관급, 차관급 - 대학총장(장관, 차관급) - 국회의원 - 광역·기초자치단체장 -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	- 대기업 회장, 공기업 대표 -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(경상북도 사전협의)	300,000	200,000 (매시간)	
	1급 (전·현 직)	- 대학의 교수 - 판·검사 - 지방의회의원 - 언론인 - 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 4급 이상 공무원	- 변호사, 의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-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이상 - 유명 예술인, 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-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-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	250,000	120,000 (매시간)	
	2급 (전·현 직)	-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-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급 이하 공무원	-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-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,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- 원어민 어학 강사(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, 동일업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) -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	150,000	80,000 (매시간)	
	3급		-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-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	100,000	50,000 (매시간)	
	4급		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80,000	40,000	
	5급	-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※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자		60,000	30,000 (매시간)	

□ 위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‘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’을 준용함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

공모사업명		2026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					
사 업 개 요	신청단지	단 지 명				동 수	
		주 소				세 대 수	
	사업내용	세부사업명		주요내용			
사 업 비	내 역	총 계		보조금		자부담	
		천 원(100%)		천 원(%)		천 원(%)	
연 락 처	성 명 (실무담당자)			주 소 (도로명주소)			
	전화번호			휴대폰			
	E-Mail			FAX			
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장 : (인) 입주자대표회장 : (인) 관리사무소장 : (인)							
첨부서류 : 1. 사업계획서 1부. 2.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1부. 3.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.							

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

신 청 인	개 인(단 체)명				회원수	
	소 재 지					
	대 표 자	성 명			생년월일 (등록번호)	
		주 소			전 화	
사 업 내 용	분 야					
	신 청 사 업 명					
	사 업 기 간				장 소	
	총소요사업비				지원신청액	
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대표자 (신청자) (서명 또는 인) 예천군수 귀하 ※ 첨부서류 1. 사업계획서 2. 기타참고사항(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) 등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사 업 계 획 서

1. 사 업 명 :

2. 사업목적 :

3. 사업내용

가. 사업기간 :

나. 사 업 량 :

다. 지원근거 : 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7조의2

라. 주요내용 :

4. 기대효과 :

5. 집행계획

(단위 : 천원)

※ [별표 제1호 서식]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바람

세부사업명	지출항목	금 액			산 출 내 역
		계	보조금	자부담	
	총 계				
	소 계				
	소 계				
	소 계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(변경)신고서					공동체지원이사		입주자대표회장		
					관리사무소장				
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(변경)	단체의 명칭								
	대표자	성 명		전화번호	자 택				
		동, 호수			핸드폰				
	구성 내용	구성목적							
		구성일시							
		구성인원							
		활동내용							
사업 지원	사업 내 용	사업목적							
		사업대상							
		사업기간							
		추진방법							
		사업비							
		기대효과							
준수 사항		○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. ○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,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○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,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.							
별 첨		회칙, 회원명부, 사업계획서(관련자료 포함), 의결서							
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대 표 자 (인)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									

[별지 제5호 서식]

사업비 지원 신청서					
신청단체명					
대표자	성명		전화 번호	자택	
	동, 호수			핸드폰	
신청 내용	신청 사업비				
	의견 및 특이사항				
준수사항		○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○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.			
별첨		- 세부 사업계획서(관련자료 포함) - 의결서(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)			
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대 표 자 (인) ○○○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					

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

신청 단지		사 업 명	
-------	--	-------	--

심사 항목	배 점	내 용	상세 배점	평가 점수	
총 계	100				
취지 적합성	25	-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-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가능한 양질의 사업 여부	높음: 25 보통: 20 낮음: 15		
실현 가능성	25	- 응모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-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여부 - 책정 예산의 타당성 및 현실성 여부	높음: 25 보통: 20 낮음: 15		
주민 참여성	25	- 입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 여부 -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사업 지양 여부	높음: 25 보통: 20 낮음: 15		
사업 지속성	25	- 일회성,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- 장기적 및 지속적 규모로 확대 가능한 사업 여부	높음: 25 보통: 20 낮음: 15		
종합 의견					
지원 금액	신 청 액(천원)			부서 검토액(천원)	
	계	보조금	자부담	계	보조금

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단지 선정 평가표

단 지 명			진행 사업명	
심사 항목	배 점	내 용	상세 배점	평가 점수
총 계	100			
주민 참여성	25	· 입주자등의 참여도 · 참여 유도(단지 내 행사 연계 등) · 전 연령층(아동,노령 등) 참여 내용 여부	높음: 25 보통: 15 낮음: 5	
지역 경제 활성화	30	· 예천군 관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출 비율	75% 이상 : 30 60 ~ 74% : 20 40 ~ 59% : 15 20 ~ 39% : 10 19% 이하 : 5	
보조사업 관리	20	·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·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	우수 : 20 보통 : 10 미흡 : 0	
공동체 구성 다양성 및 참여성	15	·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2개 이상 단체 협업	우수 : 15 보통 : 10 미흡 : 5	
입주자 대표회의 이수율	10	·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준	80 ~ 100% : 10 70 ~ 79% : 8 60 ~ 69% : 4 51 ~ 59% : 2 50% 이하 : 0	
지역 공동체 형성 기여	+15 (가점)	· 인근 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협업 여부	+15	
사업 진행 민원제기	-30 (감점)	·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	최대 -30	